

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(4차)

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 사업의 2025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※ 2025년부터 기존의 ‘중소기업 IP 바로지원’이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으로 사업명이 변경 되었습니다.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,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-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

□ 지원대상

- 지역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

□ 접수기간

- 4차 공고 : 2025. 7. 11(금) 09시 ~ 7. 21(월) 18시

- * 분기별 공고 및 모집하며,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 상이
- * pms.ripc.org/main.do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

□ 신청방법

- 지원사업 신청시스템(pms.ripc.org/main.do)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*

- * 신청시스템 접속(pms.ripc.org/main.do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
- 제출서류 : [온라인신청서](#) 및 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필수 첨부 서류

- * 과거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(양식준수)

□ 지원절차

- 신청·접수 →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→ 선정심의(지원여부 결정) →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
- * 감염병·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
□ 지원규모

- 기업 당 2,000만원 이내(지원금 합산 기준, 자부담 제외)

□ 기업분담금

-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%

□ 지원내용

-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, 외부기관(분야별 전문기관)과 함께 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

<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>

구분	세부 사업명	정부지원금 규모	분담금
해외출원 비용지원	특허(PCT)	2,200천원 이내	현금 40%

※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<과업별 주요 지원내용>

구분	세부사업명	지원내용
해외출원 비용지원	특허(PCT)	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 지원

□ 선정평가

- ① [신속진단KIT] → ② 우대가점 → ③ 세부 선정심의(정량, 정성평가 합산) →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

<선정 평가 항목>

구분	항목	배점
정량	신속진단 KIT 점수(현장실사 결과 반영)	40
정성	지원사업 필요성	20
	지원사업 활용가능성	20
	수혜사업의 수행의지	20
우대가점	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?	예 (1) / 아니오 (0)
총점		101

<신속진단KIT>

연번	문항	선택지
1	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? (시장대응, 수출계획, 기술개발 완료)	낮음 / 보통 / 높음
2	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?	없음 / 1년 이내 / 6개월 이내
3	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? (신청일 기준 등록유지)	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
4	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? (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)	5건 이상 / 3~4건 / 1~2건 / 0건
5	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?	없음 / 있음
6	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?	없음 / 1~2건 / 3건 이상
7	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(상담)을 받은 적이 있는가?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 *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	없음 / 1~2회 / 3회 이상
8	과제참여(예정)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? *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	없음 / 3년 이내 / 1년 이내
9 (동의)	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?	예 / 아니오
총 점수		

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

번호	Check List	비고
기본 확인 서류	① 사업자등록증(중소기업확인 : http://sminfo.mss.go.kr) (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) ② 전년도 재무제표	
1	◇ 시장대응, 수출계획, 신기술개발 항목 중 [낮음] 해당없음 / [보통] 하나만 해당 / [높음] 둘 이상 해당 ※ 시장대응-관련 제품(상품)의 시장 출시 증가/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※ 수출계획-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(이메일) 등 ※ 기술개발-사내/외부기관 보고서, 언론보도, 기업홈페이지 등	항목 1
2	◇ [활용계획서]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※ 특허맵, 디자인맵, CI는 활용계획서/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·디자인창출/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	항목 2
3	◇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/상표)의 국내·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/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※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(개인 불인정) -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※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※ 등록원부 :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에서 조회 출력	항목 3, 4
4	◇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, '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'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, 언론보도,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.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	항목 5
5	◇ 각종 수상경력서 /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※ NT, KT, EM, IT, ET, EEC, CT, NET, NEP, Inno-biz, ISO, 메인비즈, 벤처 등	항목 6
6	◇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[IP상담 확인서] ※ 방문상담(센터방문, 신청기업방문)만 인정 (전화상담 제외) ※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	항목 7
7	◇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	항목 8

□ 문의처

- 지역지식재산센터(<https://www.ripa.or.kr/pms>, 대표전화 1661-1900)를 통한 상담 및 신청

구분	센터명	문의처	구분	센터명	문의처
1	서울센터	02-2222-3856	14	전남센터	061-242-8587
2	경기센터	031-500-3043	15	광주센터	062-604-9241
3	인천센터	032-810-2880	16	전북센터	063-252-9301
4	강원센터	033-749-3331	17	제주센터	064-755-2554
5	충남센터	041-559-5752	18	경기남부센터	031-244-8321
6	대전센터	042-933-7812	19	경기북부센터	031-539-5163
7	충북센터	043-229-2738	20	강원서부센터	033-254-6580
8	세종센터	044-998-7773	21	강원남부센터	033-552-5555
9	부산센터	051-714-0681	22	충북북부센터	043-843-7005
10	울산센터	052-228-3085	23	경북북부센터	054-859-3093
11	대구센터	053-222-3146	24	경북서부센터	054-454-6601
12	경북센터	054-274-5533	25	경남서부센터	055-762-9411
13	경남센터	055-210-3098	26	충남서부센터	041-663-0041
총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					

□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·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,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(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), 지식재산 긴급지원 (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), 소상공인 IP창출지원(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), IP나래 프로그램,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&D(한국특허전략개발원)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
-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(연속지원 가능) 지원 가능 하며,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
-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2개년 지원 등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,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
-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

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: <http://www.kipa.org/ip-job/>

[붙임] 세부 지원 내용

1

해외출원비용지원(특허(PCT))

가. 사업목적

-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

나. 지원대상

- 지역소재 중소기업

※ PCT 출원은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

다. 지원내용

-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

라. 지원기준

- (PCT 출원)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

○ 기타 참고사항

- (출원번호)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
- (출원기준)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, 개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- (공동출원)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

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	공동출원 대상자
중소기업	중소기업 / 개인사업자(대표자)
개인사업자(대표자)	대학 / 정부출연연구기관

※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
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
-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- 국내 출원무효,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
-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,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
-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

마. 지원규모

구분	세부사업명	정부지원금 규모
해외출원 비용지원	특허(PCT)	2,200천원 이내
자부담	현금 40%	

※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
 ※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경우, 해외출원비용지원은 특허(PCT)에 한하여 지원 제공